

2015년도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2015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거 2015년도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1년간 근무성적 및 업무 실적을 평가하여 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코자 함

I 개 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6조의2 (성과상여금)
- 「2015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자치부 예규 제10호)

□ 지급기준일: 2014. 12. 31. (평가대상기간: 2014.1.1.~12.31.)

□ 지급방법: 개인별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지급기준일 당시 부서에서 지급

□ 지급대상: 2014. 12. 31.기준 우리 구 소속 공무원 (일반직 및 별정직)

※ 정무직, 임기제 및 4급 이상 공무원 중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제외

□ 지급대상 세부기준

1) 지급기준일('14.12.31.)에 퇴직한 공무원은 지급대상에 포함

* '14.12.30. 이전에 퇴직한 공무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2) 파견·휴직·직위해제 및 기타사유에 따른 직무 미종사자도 지급대상에 포함

3)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 후 2개월 미경과자는 승진 전 계급의 현원으로 봄

4) 파견·교류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원소속 기관에서 성과상여금 지급

5) 강임자는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된 계급기준으로 성과상여금 지급

6) 지급기준일 현재 부서원 중 타부서 지원근무자는 원 소속부서에서 평가 지급

* 단, 원 소속부서 근무일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근무 부서에서 평가 지급

□ 평가기준 (10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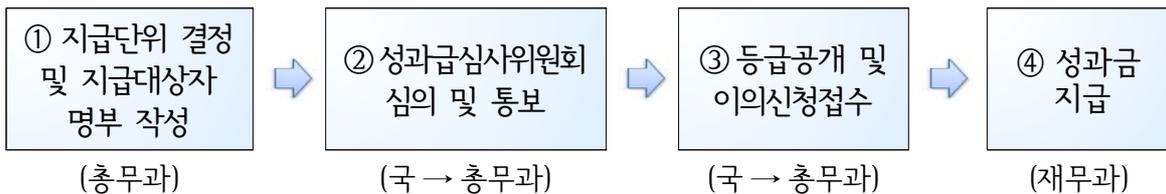
'14년 4월(상반기) · 10월(하반기) 근무성적평정(50점) + 성과급심사위원회 조정점수(50점)

- 근무성적평정: 70점(현행 수1 기준)을 50점 기준으로 환산 적용
(예시) 69.80인 경우 $69.80 \times 50/70 = 49.86(49.857\dots)$ 소숫점 셋째자리 반올림
- 조정점수: 2014년도 업무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조정

□ 지급방법 및 단위

- 5급 · 6급: 기관 전체를 단위로 구성하여 지급
- 7급 이하: 국별 지급
 - 담당관, 국, 보건소, 구의회, 동별로 지급(동은 자치행정과에서 총괄)
 - 직렬 구분 없이 직급별로 지급단위를 구성(관리운영직 포함)하되, 전문경력관 및 청원경찰은 별도 지급단위를 구성함

□ 성과상여금 지급 절차



Ⅱ 세부 지급계획

- 지급대상: 1,211명 (5급이하 일반직, 별정직 및 청원경찰)
- 지급액: 계급별 지급기준액에 의함 (별첨 1)
- 지급예정일: 2015. 3. 12.(목)

□ 지급등급 및 지급률

구 분	S등급 (10%)	A등급 (50%)	B등급 (40%이내)	C등급 (2%내외)	등급간 지급률 차이		
					S-A	A-B	S-B
지급률	172.5%	125%	85%	0%	47.5%	40%	87.5%

* S:A:B:C = 10:50:40:0 원칙 (단, C등급 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원칙대로 B등급까지 10:50:40 비율로 인원배정 후, C등급 인원 수만큼 B등급 인원수 차감조정)

□ 지급등급별 인원 결정

○ 기본 원칙

- 구 전체의 지급대상인원과 지급등급별 인원을 정한 후 이를 지급단위 [담당관, 국, 보건소, 구의회, 자치행정과(동 주민센터)]에 배정하고,
- 지급단위에서는 이를 세부 지급단위인 과·동에 배정하여야 함

○ 인원 결정

- 지급단위기관내의 계급별 현원에 지급등급별 인원비율을 곱하여 지급등급별 인원을 결정
- 지급등급별 인원합계가 현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값이 큰 순서대로 올림하고 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등급부터 올림하여 인원 결정

(예시) 현원이 29명인 경우 (S:A:B:C = 10:50:40:0)

S등급: 2.9명, A등급: 14.5명, B등급: 11.6명, C등급: 0명

① 지급제외 대상자가 없을 경우

⇒ S등급: 3명, A등급: 14명, B등급: 12명, C등급: 0명

② 지급제외 대상자가 2명 있을 경우 (B등급에서 인원 차감조정)

⇒ S등급: 3명, A등급: 14명, B등급: 10명, C등급: 2명

□ 지급단위별 인원 조정

- 지급단위별 지급대상인원 및 지급등급별 인원 배정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되, 지급단위별 해당인원의 합계가 지급단위 전체 해당 인원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아래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정

- ①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부서 ② 인원이 많은 부서
- ③ 위 ①, ②의 방법으로 결정이 어려울 경우 구청장이 종합적으로 판단 결정함

□ 평가등급별 지급대상 인원의 결정

- ① S등급 인원: 구 전체 S등급 인원 × (부서 지급대상 인원 ÷ 구 전체 지급대상 인원)
- ② A등급 인원: (구 전체 S등급 인원 + A등급 인원) × (부서 지급대상 인원 ÷ 구 전체 지급대상 인원) - ①
- ③ B등급 인원: 부서 지급대상 인원 - (①+②)
※ C등급 인원이 있을 경우: 최종 B등급 인원 = ③ - ④
- ④ C등급 인원(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지급제외대상 인원수

- 지급단위[담당관, 국, 보건소, 의회, 동(자치행정과)]에서는 필요한 경우 단위별·지급등급별 해당인원 범위안에서 위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부서별 지급인원 및 지급등급별 인원을 부서간에 조정할 수 있음

Ⅲ 세 부 평 가 기 준

□ 근무성적평정(50점),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50점)를 합산

- 근무성적 평정점(4월, 10월 평정점 평균)을 50점,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를 50점으로 하여 이를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순위 결정

- 근평점수가 없는 9월 이후 신규임용자 또는 승진자의 성과상여금 평가기준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7조제5항을 준용하여 평정점수 만점(70점)의 60%를 반영하여 42점 부여 (50점으로 환산시 30점)

(예시) 신규자: 하반기 근평(42점)을 2회 인정, 승진자: 상반기 근평 + 하반기 근평(42점)

- 단, 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을 1회만 실시한 경우, 이를 2회로 인정하여 평가하되, 별도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조정

□ 직군 · 직렬 구분없이 직급(계급)별 평가

- 일반직(관리운영직 포함), 별정직 통합 평가
- 전문경력관 및 청원경찰은 별도 단위로 구성하여 평가

□ 파견공무원 평가

- 파견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원 소속기관에서 성과상여금 지급
- 파견공무원에 대해 파견받은 기관에서는 별도의 성과평가 후 지급등급을 결정하여 원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원 소속기관에서는 파견기관의 지급등급 결정결과 상위 10%(S등급)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는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
- 단, 파견기간이 짧거나 파견기관의 규모·성격 등으로 파견받은 기관에서 별도의 성과평가가 어려운 경우 원소속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등급 결정

□ 지급제외 대상자 (C등급 부여)

- 평가대상 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 ※ 적극적으로 업무수행 과정 중에 과실로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자는 B등급 고려
- 평가대상기간 중 휴가·휴직·직위해제·교육훈련 파견 등으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 실제로 근무한 기간 >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기간(성과평가 대상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 휴직(「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

(예시)

2014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휴직하였을 경우, 실근무기간 2개월 미만에 해당되지 않으나, 이때 1월 3일부터 1월7일까지 연가(총3일)를 사용하였을 경우, 3월 5일까지 근무하고 3월 6일부터 휴직해야 실근무기간 2개월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다.

30일 미만의 휴가는 토요일 및 공휴일이 제외되므로, 실근무 산정시에도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 성과상여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수령한 자

S등급 제외자 및 B등급 우선 배치자

○ 평가대상기간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는 S등급 제외 가능

○ B등급 우선배치: 평가대상기간 중 ‘불문경고 또는 훈계’ 처분을 받은 자

* 단, 주의처분(구두주의 제외)을 받은 경우 등급 결정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음

출산휴가자 및 강임자

○ 출산휴가의 경우 「여성발전기본법」 제18조의 취지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 배제

○ 강임의 경우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된 계급기준으로 성과상여금 지급

동점자 처리기준

○ 아래의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동점자간 서열을 부여하고, 지급순위 결정을 위하여 공동 또는 동일 순위자가 없도록 하여야 함.

* 단, 지급등급이 동일하여 동점자간 서열을 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동점자 처리기준 >

- ① 근무실적(목표달성도)평정점수가 높은 자
- ② 현 보직기간이 오래된 자 ③ 현 직급 임용일이 빠른 자

□ 성과상여금을 부당 수령한 경우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성과상여금 “미지급”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규정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등 처리지침, 행자부예규 제10호-

- *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 *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 *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 과거의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부서 등으로부터 금년도에 확인 된 경우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되, 성과상여금이 기 지급된 경우 다음연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IV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

- * 구성: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 계급자 중에서 소속기관 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 ~ 7인 이내 공무원

1) 구 성과급심사위원회

- 구 성: 위원장(부구청장), 위원(국장 6)
- 심의내용: 5급·6급 평정, 지급순위의 결정 및 이의신청 재심사

2) 국별 성과급심사위원회

- 구 성: 위원장(국장), 위원(소속 과장)
 - * 다만, 담당관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부구청장임
- 심의내용: 7급 이하 평정, 지급순위의 결정 및 이의신청 재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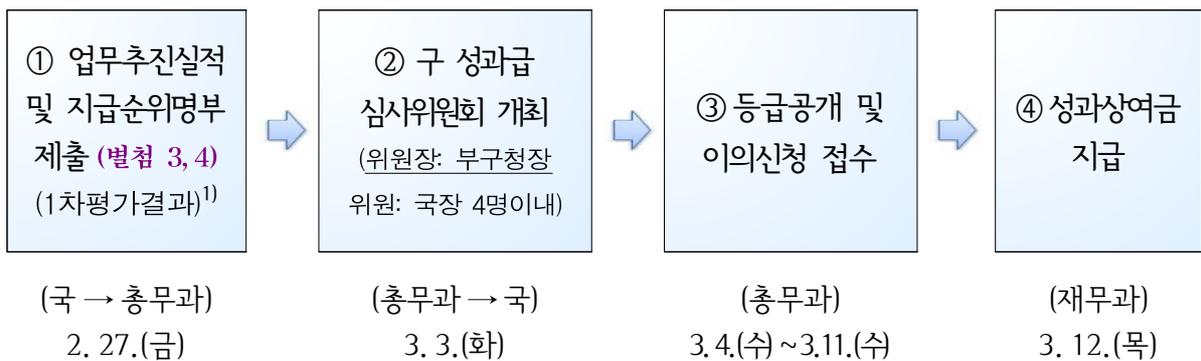
□ 지급등급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 등급결정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 (별첨 5)

- ①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부서장]
⇒ 개인별 지급등급 통보[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최하위등급으로 평가된 자에게는 그 사유 설명
- ② 이의가 있을 시 통보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 소속부서장에게 이의 제기
- ③ 소속부서 장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1일 이내 재심 요구
- ④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는 재심사청구 접수일로부터 1일 이내 재심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

V 성과상여금 지급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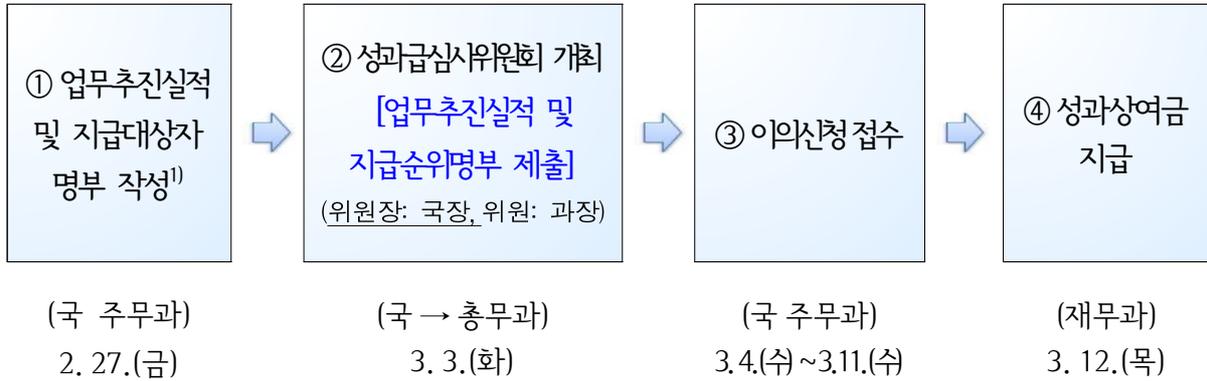
□ 5급 및 6급



※ ¹⁾ 국 주무과에서는 5·6급에 대해서도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별첨 4)를 작성하여 총무과로 제출 (7급 이하와 동일함)

⇒ 구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최종등급 평가 실시 (국 자체평가 순위 존중)

□ 7급 이하



※ 국 주무과에서 모든 절차를 주관함

VI 소 요 예 산

□ 2015년 편성예산: 3,466,768천 원

○ 일반회계: 3,376,904천 원

- 총무과,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포상금, 성과상여금

○ 특별회계: 89,864천 원

- 교통지도과,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포상금, 성과상여금

□ 소요 예상액: 3,334,918천 원

지급등급(인원비율)	S등급 (10%)	A등급 (50%)	B등급 (40%이내)	C등급 (2%내외)
지급률(%)	172.5	125	85	미지급
인원(1,211명)	122	605	425	59
예상 소요예산(천원) (3,334,918)	527,426	1,894,653	912,838	-

VII 행정사항

○ 지급단위별(국, 보건소, 의회, 자치행정과) 조치사항

- '14년도 개인별 업무추진실적(1.1.~12.31.)에 근거하여 자체심사 후 등급 결정
- 업무추진실적 및 지급순위명부 제출(국 주무과→총무과): '15. 3. 3.(화)까지
- 각 국장께서는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방지를 위해 부서장 및 직원교육 철저

※ 국별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는 반드시 개인별 업무추진실적에 의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과상여금 등급 공개: 2015. 3. 4.(수) 이후

- ※ 확인방법: 새올행정시스템 우측 상단의 신규구축 → 성과등급 관리 → 개인별 등급조회
- ※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비공개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2015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자치부 예규 제10호)」 적용

< 별첨 >

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2.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사항
3. 업무추진실적 서식
4.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 서식
5. 이의신청서 서식
6. 지급단위별 인원 현황. 끝.

(별첨 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인원비율)	S등급 (10%)	A등급 (50%)	B등급 (40%이내)	C등급 (2%내외)
지급률(%) - '기준액' 기준	172.5%	125%	85%	0%

○ 위의 지급등급과 지급률에 의한 평균지급률 계산

: S등급(0.1×172.5) + A등급(0.5×125) + B등급(0.4×85) = 113.75%

○ 지급기준액 조정지수 계산

: 조정지수 = 표준평균지급률(110%) / 평균지급률(113.75%) = **0.967**

○ 조정지급액 계산: 지급기준액 × 조정지수

□ 직급별 지급기준액

(단위: 원)

직급	지급기준액	조정지급기준액 (조정지수 0.967)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172.5%	125%	85%	0%
4급	4,093,800	3,958,705	6,828,760	4,948,380	3,364,890	-
5급	3,555,800	3,438,459	5,931,340	4,298,070	2,922,680	-
6급	3,057,000	2,956,119	5,099,300	3,695,140	2,512,700	-
7급	2,599,000	2,513,233	4,335,320	3,141,540	2,136,240	-
8급	2,159,000	2,087,753	3,601,370	2,609,690	1,774,590	-
9급	1,835,800	1,775,219	3,062,250	2,219,020	1,508,930	-
전문경력관(나군)	2,884,900	2,789,698	4,812,220	3,487,120	2,371,240	-
청원경찰(경장)	2,210,700	2,137,747	3,687,610	2,672,180	1,817,080	-

(별첨 2)

- 성과급심사위원회 -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 사항

지급단위별 조정점수(최대 50점), 동점자 처리 등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지급단위(국)별로 부서별 특성 및 근무여건 등을 반영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주요 고려사항

- 구정 주요업무추진 우수부서 및 예산절감 우수부서의 유공 직원
- 국별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담당자
- 구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 업무 및 제도개선, 예산절감, 고충민원 처리자
- 상훈, 표창수여자, 수상자 등
- 2014년 실적가점이 높은 자(동점자 처리기준에만 적용)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감점요인)
- 민원처리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감점요인)
- 기한 내 민원업무(유기한 민원, 정보공개처리) 등을 처리하지 않은 자 등(감점요인)

(별첨 3)

업 무 추 진 실 적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현 직급일	전 직급일	비고

업무추진실적

주 요 내 용	비고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서울 ○ 서울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견 (특이사항 있을 시)	조정점수 (50점 한도)

※ 조정점수는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부여함.

작성자(본인):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별첨 5)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p>「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p> <p style="margin-left: 200px;">2015년 월 일</p> <p>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p> <p style="margin-left: 100px;">000국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p>					

(별첨 6)

- 2015년 성과상여금 -
지급단위별 인원 현황

직급	총인원	S등급 (10%)	A등급 (50%)	B등급 (40%이내)	C등급 (2%내외)
총 계	1211	122	605	425	59
4급	1		1		
전문경력관	1		1		
청원경찰	1		1		
소 계	1208	122	602	425	59
5급	49	5	24	18	2
담당관	2		1	1	
행정관리국	13	1	7	4	1
기획재정국	5	1	2	2	
주민생활국	4	1	2	1	
도시관리국	5	1	2	2	
안전건설교통국	2		1	1	
보건소	4		2	1	1
구의회사무국	2		1	1	
동 주민센터	12	1	6	5	
6급	285	29	142	112	2
담당관	9	1	4	4	
행정관리국	53	5	27	21	
기획재정국	37	4	18	15	
주민생활국	35	4	17	14	
도시관리국	29	3	14	11	1
안전건설교통국	34	3	18	13	
보건소	30	3	15	12	
구의회사무국	3		2	1	
동 주민센터	55	6	27	21	1

7급	525	53	262	185	25
담당관	14	1	7	5	1
행정관리국	85	9	42	29	5
기획재정국	80	8	40	29	3
주민생활국	83	8	42	29	4
도시관리국	48	5	24	15	4
안전건설교통국	73	7	37	29	
보건소	36	4	18	10	4
구의회사무국	11	1	5	5	
동 주민센터	95	10	47	34	4
8급	239	24	119	69	27
담당관	9	1	4	3	1
행정관리국	43	4	22	13	4
기획재정국	32	3	16	9	4
주민생활국	32	3	16	9	4
도시관리국	18	2	9	5	2
안전건설교통국	28	3	14	9	2
보건소	6	1	3	2	
구의회사무국	4		2	2	
동 주민센터	67	7	33	17	10
9급	110	11	55	41	3
담당관	3		2	1	
행정관리국	10	1	5	4	
기획재정국	7	1	3	2	1
주민생활국	18	2	9	6	1
도시관리국	10	1	5	4	
안전건설교통국	5		3	2	
보건소	8	1	4	3	
구의회사무국	2		1	1	
동 주민센터	47	5	23	18	1